

대학 직제규정

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2012. 09. 01. 최초제정 | 2017. 04. 01. 부분개정 | 2021. 08. 01. 부분개정 | 2024. 10. 17. 부분개정 |
| 2012. 12. 01. 부분개정 | 2017. 09. 13. 부분개정 | 2021. 10. 01. 부분개정 | 2024. 11. 08. 부분개정 |
| 2013. 03. 01. 부분개정 | 2018. 02. 01. 부분개정 | 2022. 03. 01. 부분개정 | 2025. 01. 01. 부분개정 |
| 2013. 05. 01. 부분개정 | 2018. 04. 01. 부분개정 | 2022. 07. 01. 부분개정 | 2025. 02. 01. 부분개정 |
| 2013. 09. 01. 부분개정 | 2018. 07. 01. 부분개정 | 2022. 08. 01. 부분개정 | 2025. 03. 01. 부분개정 |
| 2014. 03. 01. 부분개정 | 2019. 03. 01. 부분개정 | 2023. 01. 01. 부분개정 | 2025. 03. 17. 부분개정 |
| 2014. 07. 01. 부분개정 | 2019. 04. 01. 부분개정 | 2023. 03. 01. 부분개정 | 2025. 04. 01. 부분개정 |
| 2014. 10. 01. 부분개정 | 2019. 06. 17. 부분개정 | 2023. 06. 01. 부분개정 | 2025. 04. 11. 부분개정 |
| 2015. 06. 01. 부분개정 | 2019. 08. 15. 부분개정 | 2023. 07. 01. 부분개정 | 2025. 06. 01. 부분개정 |
| 2015. 12. 15. 부분개정 | 2019. 10. 01. 부분개정 | 2023. 08. 01. 부분개정 | 2025. 08. 01. 부분개정 |
| 2016. 01. 01. 부분개정 | 2019. 10. 15. 부분개정 | 2023. 09. 01. 부분개정 | 2025. 10. 20. 부분개정 |
| 2016. 03. 01. 부분개정 | 2020. 02. 27. 부분개정 | 2024. 02. 01. 부분개정 | 2025. 12. 15. 부분개정 |
| 2016. 07. 01. 부분개정 | 2020. 06. 01. 부분개정 | 2024. 04. 01. 부분개정 | 2026. 03. 13. 부분개정 |
| 2016. 10. 01. 부분개정 | 2020. 08. 07. 부분개정 | 2024. 05. 01. 부분개정 | 2026. 04. 01. 부분개정 |
| 2016. 12. 01. 부분개정 | 2020. 09. 01. 부분개정 | 2024. 07. 01. 부분개정 | 2026. 05. 01. 부분개정 |
| 2017. 02. 01. 부분개정 | 2021. 06. 01. 부분개정 | 2024. 09. 01. 부분개정 | |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제7장 제2절 및 대전보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학칙 제2장에 따라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대학의 직제는 법령, 정관 및 학칙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제3조(기구) 대학의 기구표는 [별표 1]과 같다.

제4조(사무분장) 이 규정에서 정한 각 조직의 사무분장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교원 및 직원) 대학에는 다음과 같이 교원과 직원을 둔다.

1. 교원은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하며, 필요에 따라 초빙교원, 겸임교원, 강의전담교원, 산학협력중점교원, 강사 등을 둘 수 있다.<개정 2021.06.01.>
2. 직원은 일반행정직렬, 행정실무직렬, 일반기술직렬, 기술실무직렬로 구분하며, 필요에 따라 계약직, 임시직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정원) 교원의 정원은 대학설립·운영규정 제6조에 의하고, 직원은 정관 제92조의 [별표 2]와 같다.

제2장 총장·부총장

제7조(총장) ①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 대학을 대표한다.

제8조(부총장) ①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, 총장 유고 시 그 업무를 대리한다.

<개정 2015.12.15.>

②대학에 1명 이상의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총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

거나, 3급 이상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 중에서 보한다.<개정 2025.01.01.>

③부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<신설 2014.10.01.>

제9조(총장보좌기구) ①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속실을 둔다.<개정 2015.12.15.>

②삭제 <2015.12.15.>

③삭제 <2015.12.15.>

제9조의2(청렴감사실) ①대학의 총장직속기구로 청렴감사실을 두며, 청렴감사실에는 실장을 둔다.

②청렴감사실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보수 및 수당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21.08.01.>,<개정 2024.05.01.>

제9조의3(헬스케어혁신원) ①사단법인 한달빛글로벌보건연합대학 설립에 따라 대학의 총장직속기구로 헬스케어혁신원을 둔다. 헬스케어혁신원에는 원장을 두며, 원장은 본 대학소속 교원으로 겸보한다.

②헬스케어혁신원에 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부원장은 본 대학소속 교원으로 겸보한다.

③헬스케어혁신원에는 헬스케어혁신운영팀을 두며, 팀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26.03.13.>

[본조신설 2025.12.15.]

제9조의4(AI·DX사업추진단) ①대학의 AI·DX사업추진단에는 단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

②AI·DX사업추진단에는 AI·DX교육지원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26.04.01.]

제3장 대학본부

제10조(대학본부) ①대학의 본부에는 기획처, 교무처, 학생·취업처, 입학처, 사무처를 둔다.<개정 2015.12.15., 2016.01.01., 2017.04.01., 2019.08.15., 2020.08.07., 2024.02.01., 2024.09.01., 2024.10.17.>

②각 부서에는 처장을 두며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·취업처장, 입학처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고, 사무처장은 5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4.10.01., 2015.12.15., 2016.01.01., 2016.10.01., 2017.04.01., 2019.08.15., 2020.08.07., 2021.06.01., 2024.02.01., 2024.09.01., 2024.10.17.>

③각 부서에는 팀과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팀/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5.12.15., 2016.10.01., 2026.03.13.>

제10조의2 삭제 <2024.10.17.>

제11조(기획처) 기획처에는 기획팀, 대학성과·IR센터, 대학정보관리팀, 지역사회협력센터를 둔다.<개정 2015.12.15., 2016.01.01., 2016.12.01., 2017.04.01., 2018.07.01., 2020.08.07., 2021.10.01., 2024.02.01., 2024.09.01., 2024.10.17., 2025.08.01.>

제12조(교무처) 교무처에는 교무팀, 학사학위센터, 직업교육혁신센터, 직업교육콘텐츠연구센터,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둔다.<개정 2015.12.15., 2016.01.01., 2018.07.01., 2019.06.17., 2019.08.01., 2020.02.27., 2020.08.07., 2021.08.01., 2021.10.01., 2022.08.01., 2025.03.01., 2025.06.01.>

제13조(학생·취업처) 학생·취업처에는 학생팀, 취업지원센터, 직업이음센터, 자원봉사센터, 장애학생지원센터, 예비군대대를 두며, 학생팀에 건강관리실(보건, 상담)을 둔다.
<개정 2015.12.15., 2016.01.01., 2017.04.01., 2018.07.01., 2019.08.15., 2020.02.27., 2021.08.01., 2021.10.01., 2024.05.01., 2025.08.01., 2025.10.20., 2026.03.13.>

제13조의2(입학처) 입학처에는 입학·홍보팀을 둔다.
<신설 2017.04.01.>,<개정 2021.10.01., 2022.07.01., 2023.03.01., 2024.10.17., 2025.02.01.>

제14조 삭제<2019.08.15.>

제15조(사무처) 사무처에는 총무팀, 관리팀, 기숙사를 둔다.

<개정 2015.12.15., 2021.10.01.>

제15조의2 삭제 <2020.08.07.>

제4장 학과

제16조(학과) 학칙 제5조에 의한 학과에 학과장, 원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보한다. 단, 학과의 특성에 따라 비전임교원으로 보할 수 있다.<개정 2024.09.01., 2025.01.01.>

제16조의2(대학) ①대학에는 간호대학을 두며, 학장을 둘 수 있다.<신설 2018.02.01.>,<개정 2018.04.01.>

②간호대학에는 간호학과를 둔다.<신설 2018.02.01.>,<개정 2018.07.01., 2019.06.17.>

제17조(스쿨 및 학부) ①각 스쿨 및 학부는 헬스케어스쿨, 재활치료스쿨, 늘·돌봄스쿨, 보건융합학부, 군사학부, 교양교육원을 두며, 스쿨장, 학부장, 원장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., 2018.02.01., 2018.04.01., 2024.07.01., 2025.04.01.>

②헬스케어스쿨에는 간호대학,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치위생학과, 응급구조학과를 두며, 간호대학은 제16조의2를 따른다.

<개정 2018.04.01., 2020.06.01., 2024.07.01., 2025.04.01.>

③재활치료스쿨에는 물리치료학과, 작업치료학과, 스포츠건강관리과를 둔다.

<개정 2018.04.01., 2021.06.01., 2024.07.01., 2025.04.01.>

④늘·돌봄스쿨에는 유아교육학과, 사회복지학과, 반려동물과를 둔다.<개정 2018.04.01., 2020.02.27., 2021.06.01., 2022.07.01., 2024.02.01., 2024.07.01., 2025.04.01.>

⑤보건융합학부에는 치기공학과, 안경광학과, 보건의료행정학과, HiT자율전공학부, 뷰티케어과, 장례지도과, 바이오의약과, 컴퓨터정보학과, 패션컬러·스타일리스트과, 환경안전보건학과, 경찰과학수사학과, 재난소방·건설안전과, 호텔조리&제과제빵과, 의료경영과, 주얼리디자인과, 방송콘텐츠과, 메디컬코스메틱과, 식품영양학과를 두며, 스쿨융합선도는 치기공학과, 안경광학과, 보건의료행정학과로 한다.

<개정 2018.04.01., 2019.03.01., 2024.07.01., 2025.04.01., 2025.06.01.>

⑥군사학부에는 의무부서관과(응급구조학전공), 국방응급의료과를 둔다.

<개정 2018.04.01., 2019.03.01. 2019.06.17., 2019.10.01., 2021.06.01., 2022.07.01., 2024.02.01., 2024.07.01., 2025.04.01.>

⑦삭제<2025.04.01.>

⑧삭제<2024.10.17.>

⑨삭제<2024.07.01.>

⑩삭제<2025.04.01.>

제17조의2(보건전문기술대학원) ①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는 원장을 둘 수 있다.<개정 2023.01.01., 2023.03.01., 2025.03.01.>

②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는 신기술진단검사, 특수의료장비진단·치료향상, 디지털치위생 관리, 스마트재활 헬스케어, 디지털기반 치과보철의 석사학위과정을 둔다.

<신설 2023.01.01.>,<개정 2025.03.01., 2025.06.01.>

③보건전문기술대학원에는 석사학위센터를 두며, 센터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한다.<신설 2023.01.01.>,<개정 2025.03.01.>

[본조신설 2022.08.01.]

제18조 삭제 <2018.04.01.>

제5장 부속교육기관 삭제 <2018.07.01.>

제19조 삭제 <2018.07.01.>

제20조 삭제 <2018.07.01.>

제21조 삭제 <2016.10.01.>

제21조의2 삭제 <2018.07.01.>

제21조의3 삭제 <2018.07.01.>

제6장 부속기관

제22조(부속기관) 대학의 부속기관에는 학술정보관, 평생교육원, 인권센터를 둔다.<개정 2015.12.15., 2016.01.01. 2018.07.01., 2021.10.01., 2022.03.01., 2025.02.01.>

제23조(학술정보관) ①학술정보관에 학술정보관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5.12.15., 2016.01.01.>

②학술정보관에 도서관(도서관운영팀), 대학기록관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15.12.15., 2016.01.01., 2020.06.01., 2024.05.01., 2026.03.13.>

제23조의2(평생교육원) ①삭제<2025.02.01.>

②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<신설 2018.07.01.>,<개정 2024.09.01.>

③평생교육원에는 평생직업교육마이스터센터, 평생교육학사지원팀을 두며, 팀/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신설 2018.07.01.>,<개정 2021.10.01., 2025.02.01.,

2026.03.13.>

제23조의3 삭제 <2021.10.01.>

제23조의4(인권센터)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을 겸보하거나 외부 전문가로 한다.<신설 2022.03.01.>

제24조 삭제 <2021.10.01.>

제25조 삭제 <2021.10.01.>

제7장 부설연구소 삭제 <2018.07.01.>

제26조 삭제 <2018.07.01.>

제8장 위탁기관 삭제 <2018.07.01.>

제27조 삭제 <2018.07.01.>

제9장 학교기업 삭제 <2024.10.17.>

제28조 삭제 <2024.10.17.>

제10장 대외협력본부<개정 2022.03.01., 2025.02.01.>

제29조(산학협력단) ①산업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특수법인의 산학협력단을 둔다.<신설 2022.03.01.>

②대학의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14.10.01.>

③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<개정 2023.03.01.>

④산학협력단에는 각 호의 조직을 두며, 팀/센터장/사업단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23.03.01., 2026.03.13.>

1. 산단기획팀
2. 삭제 <2025.06.01.>
3. 삭제 <2025.01.01.>
4. 보건안전교육센터
5. 의료시뮬레이션센터
6. 대학혁신지원사업단
 - 가. 사업운영팀<신설 2023.08.01.>
7. 삭제 <2025.06.01.>
8. 삭제 <2025.06.01.>

9. 삭제 <2025.03.17.>

10. 통합 늘·돌봄 센터<신설 2025.03.17.>

⑤삭제 <2016.12.01.>

⑥삭제 <2023.03.01.>

⑦산학협력단에 위탁기관을 두며, 위탁기관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와 대전중구체력인증센터를 둘 수 있으며, 위탁기관의 장은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일반직 직원으로 보한다. 단, 겸직이 어려운 위탁기관의 경우 별도로 정한다.<신설 2018.07.01.>,<개정 2020.02.27., 2020.06.01., 2024.11.08., 2026.05.01.>

⑧삭제 <2020.08.07.>

제30조 삭제 <2023.03.01.>

제31조 삭제 <2023.03.01.>

제32조(HRD사업단) ①대학의 HRD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<신설 2017.09.13.>

②HRD사업단에는 교육운영팀, 보건·의료3D센터,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지원센터를 두며, 팀/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신설 2017.09.13.>,<개정 2021.08.01., 2021.10.01., 2024.04.01., 2024.05.01., 2025.06.01., 2026.03.13.>

제32조의2(국제교류원) ①대학의 국제교류원에는 원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

②국제교류원에는 국제교류센터를 두며, 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26.03.13.>

[본조신설 2025.02.01.]

제32조의3(RISE사업단) ①대학의 RISE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

②RISE사업단에는 사업운영팀, 지역기업지원센터(RIS), 창업AI융합지원센터를 두며, 팀/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신설 2025.04.01.>,<개정 2025.06.01., 2025.10.20., 2026.03.13.>

[본조신설 2025.03.17.]

제11장 마이스터대운영사업단 삭제 <2025.03.01.>

제33조 삭제 <2025.03.01.>

제12장 글로벌사업본부<신설 2024.10.17.>,<개정 2025.01.01.>

제34조(글로벌사업본부) ①글로벌사업본부에는 글로벌사업단을 둔다.

②글로벌사업본부의 본부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할 수 있다.

[제36조에서 이동<2025.01.01.>]

제35조(글로벌사업단) ①대학의 글로벌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,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

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

②글로벌사업단에 단장을 보좌하기 위한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, 부단장은 전임교원으로 겸보하거나 5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.<신설 2025.02.01.>

③글로벌사업단에는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두며, 팀/센터장은 본 대학 소속 교직원으로 보한다.<개정 2025.02.01., 2026.03.13.>

- 1. 사업운영팀
- 2. HiT글로벌특화센터
- 3. HiT글로벌러닝센터
- 4. L-라이프산업지원센터<신설 2025.04.11.>
- 5. IPE센터<신설 2025.06.01.>

[제37조에서 이동<2025.01.01.>]

제13장 보칙<개정 2023.09.01., 2025.01.01., 2025.09.01.>

제36조(위원회) 대학의 주요업무를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[제33조에서 이동,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<2023.09.01.>, 제34조에서 이동<2025.01.01.>]

제37조(TF팀) 대학의 새로운 업무나 특별한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TF팀 등의 특별팀을 설치할 수 있다.

[제34조에서 이동<2023.09.01.>, 제35조에서 이동<2025.01.01.>]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신설 및 폐지된 기구와 관련 보직의 임면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8조 3항의 경우 규정 개정일 기준 보직자에 대해서는 보직 임명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에 의하여 통합된 의무행정과, 보건의료정보과는 2018학년도 말까지, 방송콘텐츠과, 문화재과는 2017학년도 말까지 종전의 대학 직제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신설 및 폐지된 기구의 보직 임면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구는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제17조의 ⑥의 패션컬러·스타일리스트과는 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제6항은 위탁기관 종료시점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7조 제3항 보건의료행정(학)과, 제4항 환경안전보건(학)과, 재난소방·건설안전과, 제6항 컴퓨터정보(학)과, 펫토타케어과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제9조의2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, 제32조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7조 제4항 경찰과학수사(학)과, 제6항 예술·체육지도과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7조의2 전문기술석사과정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는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7조 제4항 메디컬코스메틱과, 의무부사관과(응급구조학전공), 제6항 반려동물과는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7조 1항 및 10항의 HIT자율전공학부 자율전공과 제17조 2항의 임상병리학과, 치기공학과, 치위생학과, 식품영양학과, 안경광학과, 제17조 3항의 방사선학과, 보건의료행정학과, 물리치료학과, 응급구조학과, 작업치료학과 제17조 4항의 환경안전보건학과, 국방응급의료과, 경찰과학수사학과, 제17조 5항의 사회복지학과, 호텔조리&제과제빵과, 제17조 6항의 컴퓨터정보학과, 스포츠건강관리과, 제17조 7항의 유아교육학과는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2024년 어린이·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한 부분은 이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3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17조의2 제2항의 스마트재활 헬스케어, 디지털기반 치과보철은 2026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9조의3의 헬스케어혁신원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대학 기구표

